대학 입학전형 회피 및 배제에 관한 규정(전면 개정안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’) 학칙 제14조(입학전형) 및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의2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입학전형의 회피·배제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입학관련 업무 참여자”는 응시생 선발과 관련한 전형자료 심사, 문제출제, 채점, 평가, 감독,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 대학 구성원을 말한다. 단, 단순 입학 관련 안내, 사무처리, 시설관리 및 통계처리 등의 업무는 예외로 한다. 이 경우, 구성원이라 함은 전임교원, 정규직원 및 기타 입학전형 대학별고사 준비 및 진행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한다.

② “회피”는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(이하 ‘응시생’)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는 것을 말한다.

③ “배제”는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.

④ “특수한 관계”란 고등교육법(제34조의2 제3항, 제4항), 고등교육법 시행령(제31조의2)에서 정하는 응시생과의 관계 및 기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를 말한다.

제3조(대상) ①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의 회피 자진신고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다.

1.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과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, 즉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 관계에 있는 경우
2.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
3.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년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「고등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
4. 제1호 ~ 3호 이외에 응시생과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입학 업무 및 기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② 배제 대상은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및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

척인 경우로 한다.

제4조(운영방법) ① 입학담당 부서장은 회피대상자가 회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자 확정 이전에 관련 회람 발송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한다.

② 회피 대상자는 소정의 자진신고 기간 중에 자진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③ 입학담당 부서장은 회피 대상자가 응시생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.

④ 입학담당 부서장은 배제 대상자가 모든 입학전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.

⑤ 입학담당 부서장은 회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전형에 참여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입학전형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.

⑥ 최종 등록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.

제5조(위반자 조치) 입학담당 부서장은 교직원이 응시생의 합격에 부정하게 기여하거나 또는 제4조제5항(운영방법)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, 필요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위반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자료 보존) 회피 · 배제 운영 결과를 자체 보관 관리하여 「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(교육부, 2018)」 입학 전형 관리의 공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하되 세부사항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